

# 체육장학사업 규정

제정 2021.09.24

**제1조(근거 및 목적)** 본회 정관 제4조 제12항에 의거 체육장학사업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, 체육경기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체육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체육장학기금의 조성
2. 체육장학기금의 관리·운영
3. 체육장학금의 지급
4.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

**제3조(장학기금의 조성)**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공공단체 보조금
2.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체육성금, 행사 수익금
3. 독지가의 찬조금
4. 체육장학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기타 수익금

**제4조(기금의 운영)** 체육장학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둘 수 있으며, 장학금은 제3조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.

**제5조(장학대상자)** 체육경기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(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)으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제대회(올림픽, 아시아경기대회, 세계선수권대회)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
2. 연령 및 학년에 비하여 경기력이 우수한 자
3. 본회에서 체육선수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4. 기타 기금 출연자가 지정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장학대상자로 지정된 자

**제6조(장학생 추천 및 심의·결정)** ①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감
2. 도 회원종목단체회장
3. 시·군체육회장

단, 필요에 따라서 추천단체는 조정할 수 있다.

②장학생 선정은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하며, 의결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7조(장학생 심사)** 장학생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.

**제8조(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)**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의 기준은 학교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9조(지급방법 및 시기)** ①장학금의 지급은 개인에게 지급한다.

②장학금은 연1회로 지급하고 그 시기는 본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10조(장학생 추천서류)** ①장학대상자 추천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 단체장이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(서식 제1호) 1부.
2. 재학증명서 1부.
3. 경기실적증명서 1부.
4. 주민등록등본 1부.

②당해 연도 체육관련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.

**제11조(추천기간 및 경기실적 산정기간)** 장학대상자 추천기간과 경기실적 산정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장학대상자의 추천기간은 장학사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2. 경기실적 산정기간은 장학금 지급 연도기준(12개월)으로 하되, 체육장학금 사업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2조(사무처리)** 장학사업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무처리는 본회 사무처에서 이를 담당한다.

제13조(운영규칙) 체육장학사업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체육 위원회가 정한다.

## **부 칙** (2021.09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

